



공공기관 보증대출 금리 차등 금지

채원영 연구원

■ 금융위는 공공기관¹⁾이 보증한 무위험대출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차별 적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였음.

- 금융위는 은행-보증기관 간 신용보증약관 중 보증부분에 부과가 금지되는 “신용가산금리”의 정의를 “부도 시 손실률을 반영하여 가산한 이자율”에서 “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한 이자율”로 개정할 예정임.
- 또한 은행이 보증부 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경우, 동 가산금리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해 변제를 거절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임.
- 약정대상기관의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의 신용위험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차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는데, 이는 은행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임.
 - 그동안 일부 시중은행들은 공공기관이 보증한 대출에도 대출자의 신용이 부족하면 기타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였음.

■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증부 대출 금리가 하락하여 6개 공공기관²⁾이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소기업·영세상공인·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.

- 이번 약관 개정 및 감독 강화로 기타 가산금리가 줄어들면 보증부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 - 현재 100% 보증부 대출의 평균금리는 4% 후반³⁾ 수준임.

(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, 금융위원회, 10/23)

1)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, 주택금융공사,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임.

2) 2012년 8월 말 기준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대한 보증 잔액은 총 97조 775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39조 3,201억 원, 기술보증기금 17조 5,985억 원임.

3) 그러나 신용 가산금리가 아닌 대출정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있어 100% 보증부 대출 간에도 금리차이는 존재함.